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2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문대립 · 황운하 · 이재강
최혁진 · 민형배 · 위성곤
임미애 · 김종민 · 정혜경
김한규 · 김재원 · 한창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추가배송료”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 또는 배송조건을 이유로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추가배송료의 부과 제한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배송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운송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 인하 또는 폐지를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수료·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발생한 추가 운송원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2. 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3. 명목을 달리하여 사실상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4. 합리적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16조의3(추가배송료의 관리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 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배송료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물가 변동, 운송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2에 따른 추가배송료 부과 제한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추가배송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추가배송료”란 <u>택배서비스 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 또는 배송조건을 이</u> <u>유로 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u> <u>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u> <u>액을 말한다.</u> 제16조의2(추가배송료의 부과 제 한 등) ① <u>택배서비스사업자는</u> <u>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u> <u>역 또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u> <u>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u> <u>기본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외</u> <u>에 추가배송료를 부과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u> <u>산간지역 등으로 인하여 객관</u> <u>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u> <u>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운송</u> <u>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u> <u>위에서 추가배송료를 부과할</u>
<u><신 설></u>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사유, 산출근거, 금액 및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추가배송료의 기준 설정, 인하 또는 폐지를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수료·성과급 등 보수를 감액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발생한 추가 운송원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2. 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신 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

아니하고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3. 명목을 달리하여 사실상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4. 합리적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추가배송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16조의3(추가배송료의 관리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배송료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물가변동, 운송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 14. (생략) ②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에 따른 추가배送料 부과 제한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